

행정처분 사전통지(공시송달)

방송통신위원회는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.

2021년 7월 19일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

- 「방송법」 제14조(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) 제1항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

2. 당사자

| 성명 | 주소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CHO JOO Y*** |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(도곡동, 대림아크로빌) |
| LEE JI *** |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18길(현석동,래미안웰스트림) |
| HING MOK C*** |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|
| KIMSEO*** |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(금광동, 래미안금광아파트) |
| LEE HYO *** | 대전 서구 둔산중로(둔산동,주은오피스텔) |
| LI LIAN*** |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359번길 |
| LIANG ZAI*** |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(비산동,셋별아파트) |
| LIJINGY*** | 전라남도 순천시 대석3길 |
| SER CHONG H*** |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7길 |

| 성 명 | 주 소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ZHAO XIAN*** |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2길 |
| ZHAO YING*** |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(천호동,강동역두산위브센티움) |
| 김은* | 서울 서초구 동광로(방배동, 방배3차 이편한세상) |
| 이영* |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(내수동,용비어천가) |
| CUI YUANQ*** |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1길 |
| QIAN YINGS*** |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잣대산로 |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- 「방송법」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인 (주)에스비에스(SBS), (주)케이엔엔(KNN) 및 (주)티비씨(TBC)는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이 제한됨
- (주)에스비에스, (주)케이엔엔 및 (주)티비씨의 2020년도 말 폐쇄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CHO JOO Y*** 등 15인은 다음과 같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됨

| 성 명 | 법인명 | 성 명 | 법인명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CHO JOO Y*** | (주)에스비에스 | SER CHONG H*** | (주)케이엔엔 |
| LEE JI *** | (주)에스비에스 | ZHAO XIAN*** | (주)케이엔엔 |
| HING MOK C*** | (주)케이엔엔 | ZHAO YING*** | (주)케이엔엔 |
| KIMSEO*** | (주)케이엔엔 | 김은* | (주)케이엔엔 |
| LEE HYO *** | (주)케이엔엔 | 이영* | (주)케이엔엔 |
| LI LIAN*** | (주)케이엔엔 | CUI YUANQ*** | (주)티비씨 |
| LIANG ZAI*** | (주)케이엔엔 | QIAN YINGS*** | (주)티비씨 |
| LIJINGY*** | (주)케이엔엔 | 이상 15인 | |

4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시정명령

- 「방송법」 제14조(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) 제1항의 위반상태를 해소(주식 매각 등) 할 것

※ 시정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며, 세부문구는 수정될 수 있음

5.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

- 「방송법」 제14조 제1항 및 제6항 제2호

6. 의견 제출

- 제출처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

(전화 : 02-2110-1459, FAX : 02-2110-0136, E-mail : kimjhw@korea.kr)

- 제출기한 : 2021년 8월 19일 까지